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윤영희 의원 발의]

| |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2478 |
|------|------|

발의일자 : 2024. 2. 2.

발 의 자 : 윤영희 의원

찬 성 자 : 장규권 의원

1. 제안이유

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기준을 명시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 및 시설까지 확대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한국산업 표준 인증 제품 등 관련 법에 의해 인증 받은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기준 마련(제2조).
- 안전에 취약한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로 비치 장소 확대(안 제3조).
- 협력체계 구축 명시(안 제7조 신설).
- 방연마스크 비치 상황 점검과 정책 효과를 위한 평가 조항 마련(안 제8조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: 2024. 2. 5. ~ 2024. 2. 13.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것을”을 “것으로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
- 나.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
- 다.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

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노인여가복지시설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”을 “노인여가복지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장소”를 “기관 및 시설”로 한다.

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5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
6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7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향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·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평가)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방연마스크”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<u>것</u>을 말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제3조(비치장소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 <u>것으로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</u> ---.</p> <p>가. 「<u>산업표준화법</u>」에 따라 <u>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</u></p> <p>나. 「<u>재난안전산업 진흥법</u>」에 따른 <u>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</u></p> <p>다. 「<u>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비치장소) ----- -----</p> |

다)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
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
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
수 있다.

1.·2. (생 략)

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2
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
시설
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
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「장
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
장애인복지시설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장소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<신 설>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
따른 어린이집

4. -----
-- 노인여가복지시설

5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
유치원

6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
른 아동복지시설

7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
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8. -----
----- 기관 및 시설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
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향상 및
화재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
·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
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평가) 구청장은 방연마스크

비치 및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
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
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
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
며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
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 5. 13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60호, 2021. 5. 13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방연마스크”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안전교육”이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비치장소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4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지원)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홍보)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, 실천·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4. 1. 18.] [법률 제19213호, 2023. 1. 17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<개정 2013. 8. 6., 2023. 5. 1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16.>

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, 2024. 1. 16.> [전문개정 2010. 6. 8.]